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7가단51501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19나1571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7가단5150145 판결

전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리, 송명호

피고1.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배경수

2.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상철, 부효준, 유일한, 김현영

변론 종결2018. 10. 25.

판결 선고2019. 2.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와 2015. 1. 22. 접수 제88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들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B공원조성)의 도시계획시설에 'C'의 성명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기념관을 설치 및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고들이 위 가.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1일당 1,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별지2 목록 기재 물품을 균열, 부식, 파손되는 방식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고들이 위 가.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1일당 1,000,000원씩을 지급하라.
4.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8.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故) C 전 D 명예회장(이하 'C 회장'이라고 한다)의 유족으로서 피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피고 기장군'이라고 한다)이 시행하던 도시계획시설사업(B공원(C 기념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지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부산 기장군 E, F, G, H, I, J, K, L, M 토지(이하 지번으로만 표시한다)를 소유하는 한편, J, K, L, M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금속기와지붕 지하 1층, 지상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2001. 12. 3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에는 이 사건 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정원과 차고 및 담장 등이 설치되어 있다.

나. C 회장은 위 N리에서 출생하였고, 이 사건 주택이 신축되기 전에는 그 지상에 C 회장 부모가 1981년경부터 목조 기와 구조의 주택을 건축하여 사망하기 전까지 거주하였다. C 회장은 위 구 주택을 헐고 신축한 이 사건 주택에 머물렀고, 지역주민들은 이 사건 주택을 C 회장의 생가라고 부른다.

다. 피고 기장군은 위 N리 마을주민들의 건의로 2011. 9월경 위 N리 일대에 C 회장의 뜻을 기리고 후세를 위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시관, 일반수장고, 자료실 등 공원시설물을 포함하는 'B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다.

라. 원고와 C 회장의 처인 O 등 C 회장의 유족들은 C 기념관이 건립되는 피고 기장군의 이 사건 사업에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5. 10. 피고 기장군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토지로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편입될 E, F, G, H[변경 전 지번 P(661m²), F(99m²), Q(539m²), R(440m²)] 토지에 관하여 기부채납을 확약하였다.

마. 2012. 7. 31. 개최된 2012년도 제6회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결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기장군 S 일원)에 대하여 원안가결하면서, 가결조건으로 B공원 생가 및 C 회장 유족 부지를 대상으로 공원 확장계획 검토를 부가하였다.

바. 피고 부산광역시는 2012. 8. 29. 부산광역시 고시 T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S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위 도시관리계획에는 공원 부지로 원고 소유의 토지 5필지(E, F, G, H, I) 1,643m², 일반 주민 소유의 토지 5필지 1,177m², 국유지 1필지 11m² 등 합계 2,831m²(이하 '1차 사업부지'라 한다)를 포함하고 있었다.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부분에 한함

가.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 공원 결정 조서(공원명 : B공원, 시설의 세분 : 문화공원, 위치 : P 일원, 면적 : 2,831m²)
- 공원 결정 사유서 : 해당 구역의 문화적 특징(마을 출신 C 국무총리 업적과 정신을 활용한 B공원 신설을 통해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휴식·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사. 피고 기장군은 2013. 4. 3. 'B공원을 지정 2,831m²에서 2,383m²를 증가하여 5,214m²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람)공고를 하였고, 피고 부산광역시는 2013. 6. 19. 사업부지를 기존 2,831m²에서 5,214m²(이후 2014. 7. 16. 면적산정 착오를 이유로 5,216m²로 변경되었다)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 이후 피고 부산광역시는 2014. 5. 21. 도시관리계획(B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였다. 위 고시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부지로 사용되던 원고 소유의 J, K, L, M 토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되었고, 이 사건 주택은 교양시설 중 '생가'로 분류되었다.

아. 피고 부산광역시는 2014. 8. 6. 부산광역시 고시 U로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B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3. 도시계획사업(B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

나. 사업의 명칭 : B공원조성

다. 사업의 위치 : E 일원

라. 사업의 규모 : 5,216m²

○ 생가 : 290m²(기존, 2층 1동)

○ 주차장 : 32m²(사고석 포장)

자. 원고는 2015. 1. 19. 피고 기장군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E 전 650m², F 대 99m², G 전 503m², H 전 390m², I 전 2m²를 기부채납(이하 '이 사건 기부채납'이라고 한다)하면서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기장군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기부채납 토지에 관하여 2015. 1. 22. 위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약정서

A(이하 '갑')과 기장군청(이하 '을')은 별지목록 기재 토지(이하 '본건 토지')의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을은 갑으로부터 기부채납받은 본건 토지를 'B공원(C 기념관)'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 을이 갑으로부터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 본건 토지를 'B공원(C 기념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을은 갑의 요청에 의하여 1개월 이내에 갑에게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한다.

제4조 본 약정은 각 당사자 사이의 유효한 약정임을 확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각 당사자는 본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본 약정을 부인하거나 본 약정으로 인하여 기부채납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경우, 을은 갑의 요청에 의하여 1개월 이내에 갑에게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한다.

제5조 본 약정은 갑, 을 사이에서 완전한 합의이며, 본 약정 이전의 문서 또는 구두로 된 모든 계약, 양해, 진술, 약정 등(이하 '종전의 계약 등')이 본 약정과 양립되지 않는 경우 본 약정은 종전의 계약 등을 대체한다.

차. 피고 부산광역시는 2015. 12. 23. 사업시행기간을 2015. 1. 8.부터 2016. 1. 2.까지에서 2015. 1. 8.부터 2017. 1. 2.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하였다.

카. 그 후 피고 부산광역시는 2017. 5. 1. 피고 기장군의 신청에 따라 '고 C 기념관을 찾는 공원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부족한 주차장 확보 및 일부 시설을 현장여건에 맞도록 변경코자 한다는 사유로 기존 광장과 주차장으로 설치예정된 부분을 서로 교체하여 기존에 광장으로 설치예정된 이 사건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그 주차장 면적도 기존 32㎡에서 380㎡로 확대하며, 사업시행기간을 당초 2015. 1. 8.부터 2017. 1. 2.까지를 2015. 1. 8.부터 2017. 6. 30.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B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를 하였고, 2017. 6. 28.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을 당초 2015. 1. 8.부터 2017. 6. 30.까지에서 2015. 1. 8.부터 2018. 6. 3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를 하였다.

타. 한편 피고 기장군은 2017. 2월 내지 3월경 이 사건 사업이 거의 완공될 단계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몇 차례 차고지 내의 원고 물품을 이동시켜달라는 취지의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7. 6월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그 단행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위 소송은 현재 1심 계속 중이고, 단행가처분신청은 본안소송 등이 제기되어 계속 중인 점 등을 감안하여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파. 원고는 2012. 2월경부터 2013. 4월경까지 피고 기장군에게 C 회장이 직접 사용한 작업복, 가방, 도서, 사진, 도자기 등 별지2 목록 기재 물품(이하 '이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C 기념관에서 전시될 사료로 증여하였고, 현재 이 사건 물품은 피고 기장군이 보관·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건 물품의 훼손 방지 등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제습기 3대를 가동하고 있으며, 제습제 및 탈취제 등도 수시로 교체하고 있으며, 보관장소에는 냉난방기도 설치하여 수시로 가동하고 있다.

하. 한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2017. 6. 28.자 도시계획시설사업(B공원조성) 실시계획 변경인가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559)을 제기하였으나, 2018. 5. 11. 패소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2018. 12. 14. 항소기각 및 추가청구 기각판결을 받았으며,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16호증의 3,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24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을가 제7호증, 을가 제11호증 내지 을가 제13호증, 을가 제25호증의 1, 2, 을가 제28호증, 을가 제29호증, 을가 제37호증 내지 을가 제3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기장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한 이 사건 약정은 원고를 비롯한 C 회장 유족들이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부지를 생활공간 및 제사를 지내던 기존 용도대로 계속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형식적으로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부담부 증여이다. 그런데 피고 기장군이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등 유족들이 이 사건 토지를 기존 용도대로 사용하게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로써 이 사건 부담부 증여를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 기장군은 원상회복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한 이 사건 약정서에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기부채납한 토지를 피고 기장군이 'B공원(C 기념관)'으로만 사용한다는 내용의 약정만 있을 뿐, 원고

주장과 같은 기부채납에 관한 조건이나 부담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약정은 원고와 피고 기장군 사이에서 완전한 합의이며, 이 사건 약정 이전의 문서 또는 구두로 된 모든 계약, 양해, 진술, 약정 등이 이 사건 약정과 양립되지 않는 경우 본 약정은 종전의 계약 등을 대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이나 이 사건 약정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담부 증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이 부담부 증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들에 대한 성명사용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1) 피고 부산광역시는 이 사건 사업의 결정권자로서, 피고 기장군은 이 사건 사업의 입안권자로서 이 사건 사업에 C의 성명을 사용하고 있고, 이를 사용한 기념관을 설치·운영하려고 하고 있다.
- (2)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에 C의 성명을 사용하면서 C 회장의 평가, 명성, 인상 등을 훼손하는 등 C 회장의 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C 회장의 유족들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족들의 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도 침해받고 있다.
- (3) 따라서 위와 같은 침해의 금지와 예방을 위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도시계획시설에 C 성명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기념관을 설치 및 운영하여서는 아니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사용금지와 그 위반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도 인정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은 C 기념관의 건립 등 C 회장의 성명이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당초 원고를 비롯한 C 회장 유족의 동의 하에 수립, 추진되었고, 원고도 이 사건 사업에 동의하고 피고 기장군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을 기부채납하는 한편, C 회장이 사용하던 유품인 이 사건

물품을 증여한 사실, 다만 이 사건 주택 및 기부채납되지 아니한 그 부지(J, K, L, M 토지)가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 피고들에게 C 회장 유족들이 이 사건 토지를 기존 사용하던 용도대로 사용하게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원고 등 C 회장의 유족들이 C 회장의 성명이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사업을 동의한 이상 피고들이 원고 등 유족들의 승낙 범위나 이 사건 사업의 목적 범위를 넘어서서 C 회장의 성명을 사용하는 등 C 회장이나 그 유족의 인격권 또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거나 그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C 성명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에 C 회장의 성명을 사용하면서 C 회장이나 원고를 비롯한 유족들의 인격권 또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이를 침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기장군에 대한 물품보관방법청구 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기장군은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물품을 C 기념관이 개관할 때까지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 기장군이 이 사건 물품을 제대로 보존처리하지 않아 현재 이 사건 물품이 균열, 부식, 파손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토지에 부설주차장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어 실현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물품은 장기간 균열, 부식, 파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 기장군은 이 사건 물품을 균열, 부식, 파손되는 방식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기장군에 대하여 그 의무를 명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그 위반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기장군이 이 사건 물품을 기증한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 사건 물품 보존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 기장군이 이 사건 물품을 제대로 보존처리하지 않아 현재 이 사건 물품이 균열, 부식, 파손되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설사 피고 기장군에게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을 제대로

보존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 기장군이 그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럴 염려가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피고 기장군에 대하여 그와 같은 의무를 명하도록 할 권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C 회장의 유족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입히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2) 피고 기장군은 이 사건 주택의 대문과 일부 담장이 원고 소유인 V 토지에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상대로 한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대문과 일부 담장이 자신의 소유인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있는 것처럼 도면을 그린 후 철거청구의 대상에 위 대문과 담장을 추가하였다.

(3) 또한 피고 기장군의 직원인 W은 관련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업을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몰아내는 사업'이라거나 N리 주민들의 건의로 이 사건 사업을 계획하고 시작한 것은 피고 기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이 원했기 때문에 군 차원에서 시행한다는 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폄하하였다.

(4)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C 회장의 유족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입히는 방법을 동원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 기장군이 원고를 상대로 한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대문과 도로에 접한 일부 담장을 철거청구의 대상에 포함시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소송은 현재 계속 중인 점, 피고 기장군의 위 추가 청구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피고 기장군이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추가 청구를 하였으며, 그 청구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기장군이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또한 피고 기장군의 직원이 W이 관련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증언은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가 제2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증언 내용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 피고 기장군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을가 제2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기장군이 유족들이 원했기 때문에 군 차원에서 시행한다는 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폄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광섭

별지